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법"이라 한다) 및 관련법규(이하 총칭하여 "금융소비자보호법령"이라 한다)에서 정한 바에 따라,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**하북농협**(이하 "농·축협"이라 한다)의 내부통제기준,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, 기타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,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 등) ① 이 규정은, 농·축협이 농협생명보험(주)나 농협손해보험(주) 등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거나 농·축협이 고유업무로서 수행하는 각 금융상품의 판매업무 등과 관련하여, 농·축협의 임직원등과 모집유자격자 및 기타 농·축협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·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농·축협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.
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(이하 "이 규정등"이라 한다)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내규 등과의 관계) ① 금융상품에 대한 개발,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·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농·축협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불구하고, 농·축협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회사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과 업무위탁에 관한 약정을 우선 적용한다. 이 경우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.

제4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규정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.
② "금융소비자보호기준"이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

- 차와 기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농·축협이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.
- ③ “내부통제기준”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.
- ④ “내부통제체계”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,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, 의사소통·모니터링·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.
- ⑤ “임직원등”이란 농·축협의 임직원과 모집유자격자 및 농·축협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·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를 말한다.

제5조(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) ①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증진,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.

②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

제6조(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) ①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업무의 종류 및 성격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농·축협은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·개정할 때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

제7조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) 농·축협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, 조합장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,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.

제8조(이사회) ① 이사회는 농·축협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.

②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한다.

- 제9조(조합장)** ① 조합장은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조합장은 농·축협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·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,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.
- ③ 조합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·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④ 조합장은 임직원등의 이 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, 이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하며, 이 규정 위반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⑤ 조합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 따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문서화하고, 정기적으로 관리·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)** ①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금융상품 개발·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조직(이하“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 및 운영한다.
-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
 2.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·운영
 3.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
 4. 금융상품의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
 5. 민원·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
 6. 임원·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
 7. 그 밖에 이 규정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
-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담당한다. 다만, 조직·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양 부서간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)**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

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.

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였거나,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처리 등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, 임직원등에 대한 출석요청, 임점실태 조사(필요시 준법감시·감사 부서에 의뢰 가능) 등을 할 수 있으며,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료제출 요구, 개선 및 시정조치 요구, 문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치하거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, 임직원등 출석요청, 임점조사 등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) ①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다.

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며, 금융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조합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·지원하여야 한다.

④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해서는 아니되며,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 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할 수 있다.

⑥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한 근무 평가시,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,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)** ①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농축협 등 상호금융업계나 보험업계 또는 기타 금융업계의 3년 이상 경력자로, 상품개발·지원, 영업·보상·서비스기획, 법무, 시스템, 통계, 감사 등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로 하여야 한다.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③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특성,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. 다만, 승진전보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④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가시,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담당직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.
- ⑤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내·외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직무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·실시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보호 우수 직원 등에 대한 포상(표창, 해외연수)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⑥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제13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.

제14조(임직원등) 임직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,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

제15조(금융상품 개발,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) ①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, 운영하여야 한다.

1.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
 2.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
-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,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1. 금융상품의 위험도·복잡성
 2. 금융소비자의 특성
 3. 금융상품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, 금융상품 운용 및 리스크 관리능력
- ③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정책 수립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

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1. 금융상품 개발·변경·판매중단
 2. 상품설명서, 약관, 가입청약서(설계서) 등 중요서류 제작·변경
 3. 제22조 제5항에 따른 판매준칙의 제정·변경
 4.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
 5.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
-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, 약관 등에 금융소비자보호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중단, 마케팅 중단,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농·축협은 제3항의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 또는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6조(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)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기관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점검항목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농·축협은 금융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내부준칙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1. 금융상품 개발부서명 및 연락처를 상품 설명자료(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자료가 아닌 농·축협 내부 자료에 한정한다)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
2. 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

제17조(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) ① 농·축협은 금융상품 개발·기획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,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농·축협은 금융상품의 신규 출시 후 금융소비자 만족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의 점검을 통해 이를 사후 검증하고, 점검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기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18조(판매 과정 관리)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판매 절차를 구축하고, 이를 매뉴얼화 하여야 한다.

1. 금융상품 판매 전 절차
 - 가.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해 금융상품별 교육훈련 체계를 갖추고, 금융상품별 판매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 - 나. 금융상품의 판매과정별 관리절차(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점검항목 제

공 및 이행 여부 포함)를 구축 및 운영하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.

다.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선택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및 금융상품의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2. 금융상품 판매 후 절차

가. 금융소비자의 구매내용 및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나.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하며, 구축된 판매 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9조(판매 후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) 농·축협은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의 변경,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,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시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의 법령상·계약상 권리가 청구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0조(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) ① 농·축협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,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.

② 농·축협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(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나 상임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농·축협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한 다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심의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③ 농·축협은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기 전에 그 광고가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,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농·축협의 금융상품 광고 행위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미승인 광고물을 제작·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농·축협은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확인할 때에는 소요기간을 안내하여야 하며, 정해진 기일 내에 확인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농·축협은 고유업무로서 수행하는 금융상품 개발·판매에 관하여 금융상품등에 관

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21조(권유,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) ① 농·축협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,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을 담당하는 임직원등의 도입·양성·교육·관리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, 부당권유행위의 금지, 광고규제 등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③ 농·축협은 설명의무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설명의 정도, 방식, 농·축협과 금융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간 설명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
④ 농·축협은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농·축협 또는 임직원등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⑤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금융상품별 또는 판매채널별 판매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, 판매준칙을 제정·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2조(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) ① 농·축협은 농·축협 및 임직원등과 금융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3조(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) ① 농·축협은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법령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·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·운영을 총괄한다.

제24조(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, 개인정보 관리) ①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,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농·축협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
제25조(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) ① 농·축협은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, 이를 점검하는 내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와의 위탁계약 체결 · 해지 절차
2.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,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, 금융소비자보호기준,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 법규, 관련 세부지침(이하 총칭하여 “규정등”이라 한다)의 준수 여부를 점검 · 관리하는 절차 및 점검 · 관리하는 조직·책임자
3. 제2호에 따른 점검 · 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
4. 고객정보의 보호(정보접근 제한, 정보유출 방지대책)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
5. 내·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
6.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기재사항
7.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관리
8.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, 교육주기,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
9.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10.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 선정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
11.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가 규정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 및 구상기준

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지급과 환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2.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에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
3.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수수료에 반영하는 사항
4. 그 밖에 관계법규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④ 농·축협은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,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에 대해 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
2. 위탁자인 농·축협의 감사 권한
3.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

4. 금융상품판매대리 · 중개업자의 규정등 준수 의무
5. 제2항 제2호에 따른 점검 · 관리 업무, 제2항 제9호에 따른 업무위탁 제한 및 제2항 제11호에 따른 제재 및 구상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

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· 조치 및 평가

제26조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)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 · 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⑤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,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농·축협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, 위규 사실 확인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
제27조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) ① 농·축협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, 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위반자 및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중대한 위법 · 부당행위의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상임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.

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

제28조(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) ① 농·축협은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·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,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농·축협은 금융상품의 위험도,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등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농·축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수준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로 하여금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,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등의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른 판매자격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농·축협은 금융상품의 위험도, 금융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판매자격별로 적절한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

제29조(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) ① 농·축협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 담당 임직원등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담당 임직원등 및 단위 조직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.

② 농·축협은 판매담당 임직원등 및 단위조직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 이외에도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있는 성과보상체계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농·축협은 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불완전판매건수, 고객수익률,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, 계약관련 서류의 충실성,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결과 등 관련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결과가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농·축협은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와 연계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⑤ 금융소비자들이 불건전영업행위, 불완전판매 등 판매담당 임직원등의 귀책사유로 금융거래를 철회·해지하는 경우 농·축협은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보상의 일정부분은 금융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임직원등 및 단위조

직에 대해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체계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, 판매담당 임직원등 및 단위조직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 결과를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⑦ 제6항을 위하여 농·축협의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
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· 변경 절차

제30조(이 규정등의 제 · 개정) ① 관련 법령 제 · 개정,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, 감독 당국의 유권해석,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 등이 있는 경우 농·축협은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규정등의 제정 ·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
② 이 규정등의 제정 · 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 총괄기관은 이 규정등의 제정 · 변경 필요성을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고 조합장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농·축협이 이 규정등을 제정 ·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·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,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,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의 제정·개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④ 농·축협은 이 규정등을 제정 · 변경한 경우 제정 · 변경사실 및 그 이유,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,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, 임직원등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, 필요 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

제31조(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) ① 농·축협은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개발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, 금융상품 판매시 강화된 판매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.

②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, 농·축협은 금융상품의 특성,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, 금융거래 경험,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
③ 농·축협은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

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- 제32조(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) ① 농·축협은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농·축협은 일선 창구에서 준수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며, 관련 상담·거래·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③ 농·축협은 장애인이 모바일·인터넷 등 비대면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④ 농·축협은 장애인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33조(세부지침의 위임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합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규정 중 농·축협이 고유업무로서 수행하는 각 금융상품의 개발·판매업무 등을 전제로 하는 각 해당 조항은 추후 농·축협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준하는 규제 법령이 제정·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직무수행 교육 이수 및 자격요건 기준

[별표]

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직무수행 교육 이수 및 자격요건 기준

□ 직무수행 교육 대상자 범위

-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, 계약체결 등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모든 개인(판매업무 종사 임직원등)

□ 필수 직무수행 교육 이수 및 자격 기준

- 필수교육 : 임직원등 본인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상품교육 이수
- 필수자격 : 임직원등 본인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판매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정 자격(예 : 보험설계사, 보험판매유자격자, 기타자격)